



산별노조·지역지부·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

2023직선 주요 Q&A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8.28.)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의결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01 선거일정 등

Q 지역본부장 후보등록이 공고된 시한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없을 때

A 후보등록 불발 등의 재선거 사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본부 운영위를 열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정한 결선투표일_12.10(일)~12.14(목) 을 선거일로 하여 지역본부 선거위가 재선거 공고하도록 의결하며 재선거 공고 시 후보등록 마감일은 지역본부 선거위가 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지역 본부장 후보 공보물은 지역본부 자체 인쇄 및 배부하도록 합니다.

Q 지역본부장 후보등록 마감일을 위원장 후보등록 마감일과 달리 정하려 할 경우

A 2020년엔 후보등록 기간을 늦춰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광역시 지역본부는 마감일을 달리 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전체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광역시 지역본부도 마감일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Q 산별노조(연맹) 위원장 등의 직선을 동시에 치르려 하는 경우

A 총연맹의 선거인명부 및 현장투표함, 그리고 전자투표 시스템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 기본이나 사전 협의를 거쳐 투표기간, 투표방법 등을 이원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별노조(연맹)가 자체 의결하여 2023년 8월 말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신청 후 조건 등을 확인한 후 9월 22일 최종 확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산별노조(연맹) 선거의 공보물과 현장투표 투표용지는 해당 산별노조(연맹)가 별도로 제작 배부하도록 합니다.

Q 민주노총 지역지부 지부장 직선을 동시에 치르려 할 경우

A 총연맹의 선거인명부 · 현장투표함 및 전자투표 시스템 하나로 일원화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관할 지역본부가 자체 의결하여 2023년 8월 말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신청 후 조건 등을 확인한 후 9월 22일 최종 확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지부 선거의 공보물과 현장투표 투표용지는 해당 지역지부가 별도로 제작 배부하도록 합니다.(투표용지에 한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일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지역지부 부담)

Q 각 단위조직(단위노조) 대표자 등의 직선을 동시에 치르려 할 경우

A 전자투표 동시선거만 가능합니다. 총연맹의 선거인명부 및 전자투표 시스템 하나로 일원화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2023년 8월 말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신청 후 조건 등을 확인한 후 9월 22일 최종 확정합니다.

02 선거인명부 작성 · 등록 · 수정 · 정정

Q 선거인명부 엑셀파일 작성 세부방법 안내에 대해

A 명부 작성용 엑셀파일 양식을 비롯한 작성 세부방법은 8월 말 ~ 9월 초에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공문 첨부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선거관리시스템 사용 권한부여 및 선거인명부 등록·수정·정정 방법에 대해

A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한 선거인명부 등록 권한은 산별노조(연맹)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대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별노조(연맹)가 요청하고 중앙선거위가 승인하면 산별노조(연맹)의 산하(단위)조직에게도 명부등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의 판단은 산별노조(연맹)가 합니다.

A 각 산별노조(연맹) 담당자를 통해 선거관리시스템 사용매뉴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명부 등록 완료일(9.22) 전까지 산별노조(연맹)가 해당자를 모아 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가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Q 선거관리시스템 계정부여자의 웹 사용 권한 범위에 대해

A 명부를 등록한 담당자는 타 조직의 명부를 볼 수 없으며 특히 휴대전화번호 목록 조회·출력은 자기 조직 명부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단위조직이 명부를 직접 등록한 경우라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나 산별노조(연맹) 누구라도 선거인 휴대전화번호를 목록으로 조회·출력할 수 없습니다. 단, 중복번호 확인 및 휴대전화번호 수정을 위해, 단위조직의 상급단위인 해당 산별노조(연맹)에게는 조합원 1명을 선택해 개인별 정보를 확인하는 메뉴를 통한 해당인 휴대전화번호 확인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A 위와 같이 각 산별노조(연맹) 담당자 외에도 산별노조(연맹)가 승인한 단위조직 담당자에도 선거관리시스템 등록·수정·정정을 위한 권한(ID/PW)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대부분의 명부 수정 및 정정은 산별노조(연맹)가 아닌 해당 단위조직 담당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때문에 선거관리시스템 등록을 직접 할 단위조직 담당자 인적사항 통지는 필수입니다.

Q 선거인명부 확정 과정 시 복수의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에 대해

A 선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 휴대전화번호 중복번호 확인이 된 이에 한해, 2023년 10월 18일까지(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 구제 개시일 전날)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와 해당 당사자조직 간 협의를 통해 하나의 소속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Q 10인 이하 단위조직의 투표방법에 대해

A 규정 상 10인 이하 단위조직은 현장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산별노조(연맹) 같은 지역의 다른 10인 이하 단위조직과 통합하여 단위조직을 재구성하여 명부를 작성·등록하거나 모바일·ARS투표를 해야 합니다. 단, 휴대전화 미소지자는 우편투표나 이메일투표를 채택하면 됩니다.

Q 선거일 기간 현장투표소 설치와 모바일 메시지·전화·이메일 송수신 모두 불가한 경우

A 해당 기간 전체에 걸쳐 항해가 예정된 일부 선원노조 조합원이나 구속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우편투표를 개방합니다. 우편투표용지는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인 11월 6일(월)까지 해당 선거인이 등재한 주소지로 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발송할 예정입니다.

Q 하나의 단위조직 내에서 여러 투표방법을 채택하려는 경우

A 하나의 단위조직이라도 단 하나의 투표방법으로 통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인명부 등록 시 투표방법별로 투표소를 나누면 나눈 투표소에 해당하는 선거인별로 여러 투표방법을 단위조직이 채택할 수 있습니다.

- Q 대구에 있는 사업장인데, 제주의 조합원이 제주본부에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조합원이 대구본부로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A 관할 지역본부는 사업장 소재지 혹은 조합원 근무지 주소로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지역을 변경하려면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제주에서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명부 작성 시 제주 투표구, 제주 투표소로 해당 조합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투표를 하려면 제주본부에서 대구본부로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Q 선거인명부 항목에 '여성'이 있던데, '이주'조합원이나 '연령', '고용형태'등도 조사할 순 없나?
- A 매년 다양한 조사에 대한 요구가 있고, 상시적인 조직현황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와 무관한 조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조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할당규정에 따라 가맹조직 별 여성할당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여성'조합원을 조사합니다. 이후 조사 항목을 늘리거나 상시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03 투표구(소) 선관위원

- Q 전자투표 채택의 경우 투표구(소)선관위원 명단 제출의 기준
- A 현장투표 채택이 아닌 전자투표 채택의 경우도 투표구(소)선관위원 명단을 정하여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2023년 10월 25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단위조직(또는 투표구) 전체가 전자투표인 경우 2인 이상을 정해야 하며, 단위조직(또는 투표구)의 일부 투표소가 전자투표인 경우는 그 투표소마다 1인 이상을 정해야 합니다. 이들의 업무는 전자투표 관련 각종 실무 창구일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역 선관위가 배부하는 공보물 수령 주체입니다.
- Q 현장투표 채택 시 1회 투표이고 1개 장소임에도 여러 투표함이 필요한 경우
- A 1회 투표이고 1개의 장소임에도 실제 선거일에 여러 투표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령, 출근 시 사업장 출입문에 여러 투표함을 두고 투표하게 할 계획을 가진 곳이 해당), 필요한 투표함 숫자만큼의 투표구(소)선관위원을 정해야 합니다.
- Q 현장투표 채택 시 복수의 현장투표소 일시가 모두 다를 경우
- A 한 사업장 내 여러 투표장소가 설치되지만 각 투표장소마다 투표일시는 다를 경우에는, 사업장 내 한 명의 투표사무원으로 여러 투표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04 선거인명부 확정(10.25) 이후 명부변경

- Q 투표일 전까지 명부의 재적인원이 변경되는 경우의 수
- A 10월 25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명단변경(추가 및 삭제)은 불가하며, 명부에 담긴 투표방법 변경 및 연락처 변경에 한해서만 수정할 수 있으며, 이 수정 시한은 각 시기마다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는 명단변경(추가 및 삭제)이 부분적으로 이뤄집니다.

- ① 민주노총 중앙위에서 부칙 특례 규정개정으로 인정받은 동시선거 가맹조직의 각 규정이 정한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따른 명단 부분 추가
- ② 투표구(소)선관위원 명단을 정하지 못한 투표구(소)의 현장투표→전자투표 전환 시 휴대전화번호 등록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 투표구(소) 선거인 재적 제외
- ③ 현장투표 일시장소를 정하지 못한 투표구(소)의 현장투표→전자투표 전환 시 휴대전화번호 등록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 투표구(소) 선거인 재적 제외
- ④ 조합탈퇴 또는 조합원 징계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재적 제외
- ⑤ 선거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장투표소가 미설치되어 현장투표→전자투표 전환 시 휴대전화번호 등록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 투표구(소) 선거인 재적 제외

Q 근무지 변경에 따른 투표소 변경에 대해

A 현장투표의 경우 선거일 기간에 근무지 변경이 확실한 경우의 현장투표 장소 변경 명부수정 조치는 11월 7일까지입니다. 11월 7일 18시 이후로는 근무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현장투표소 변경이 불가합니다. 선거일인 11월 21일 ~ 27일 사이에 근무할 근무지가 유동적인 것이 유력할 경우 처음부터 전자투표 방법으로 명부 등록해줄 것을 권장합니다.

A 현장투표든 전자투표든, 선거인의 근무지가 해외로 변경되는 경우 이메일투표로 투표방법을 변경하여 선거인명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수정 조치는 11월 13일까지입니다.

Q 선거인명부 확정 후 휴대전화번호 추가 불가

A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휴대전화번호를 신규·추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현장투표구(소) 투표 일시장소 보고가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모바일·ARS로 전환될 때, 보고된 일시에 현장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긴급하게 모바일·ARS로 전환될 때 전화번호가 없는 선거인은 재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명부 확정일 전에 모든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A 확정된 선거인명부 중 기존 휴대전화번호가 수정될 수 있는 경우는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명단 취합보고 기간(11/1~11/13)입니다.

A 변경기간이 종료된 후 모든 전자투표 선거인에게 등재 확인과 투표 안내를 모바일메시지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Q 전자투표 방법의 현장투표로의 투표방법 명부 전환에 대해

A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모바일·ARS방법의 현장투표로의 전환 불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2020년 선거 때 문제 없이 전자투표 시스템이 가동된 바 있어 전자투표의 안정성이 검증되었고 현장투표로 전환 시 추가되는 사무 과중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Q 현장투표 직전 당일 현장투표소를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

A 이미 보고 완료된 현장투표 투표구(소)의 투표 일시장소에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가령, 야외장으로 예고했으나 날씨 등의 이유로 실내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 한해, 지역본부 선관위에 단위조직이 변경장소를 즉시 통지하고, 또한 즉시 선거인에게 변경장소를 공고하면 됩니다. 이 때 공고방식은 모바일 메시지 등을 통한 공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명부변경은 없습니다.

05 후보자 인쇄공보물(포스터와 정책자료집)

Q 공보물의 현장 배부 방법에 대해

A 포스터의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단위조직에 직접 발송할 예정입니다.

A 정책자료집의 경우,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에 발송하여 산별노조(연맹) 지역조직이 해당 산하 단위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단,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이 없는 단위조직에 제대로 배부될 수 있는 체계를 10월 말까지 세부 마련하겠습니다.

A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포스터 및 정책자료집 발송 배부 과정에 모든 투표구선관위원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인쇄 공보물 배부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며, 동시에 모든 선거인에게 공보물이 게재된 선관위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A 사전 협의를 통해 동시선거를 하는 가맹조직의 공보물과 민주노총 직선 공보물의 합배송도 가능합니다.

06 선거운동 기간과 합동유세

Q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에 대해

A 후보등록 기간인 10월 22일 ~ 26일 사이에 선거운동안내서를 파일로 별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을 요약한 안내 카드뉴스도 발행 배포할 예정입니다.

Q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제출과 개인홍보물 승인절차 등에 대해

A 후보등록 기간인 10월 22일 ~ 26일 사이에 선거공보물 제출안내서 및 개인홍보물 승인절차 및 활용 안내서를 파일로 별도 만들어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 안내서에는, 포스터 편집 규격, 정책자료집 편집 규격, 유세영상 분량, 그 외 홈페이지 게재용 홍보물 규격 등과, 개인홍보물 승인 절차 및 활용 시 유의사항 및 제재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Q 지역 순회 합동유세에 대해

A 후보등록 기간인 10월 22일 ~ 26일 사이에 권역별 순회 합동유세 최종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기획서)을 미리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확정 과정에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할 것입니다.

Q 지역본부장 후보 선거운동 통제·감독 및 제재 시 지역본부 선관위의 역할

A 지역본부장 선거운동 통제·감독 및 제재의 모든 권한은 지역본부 선관위가 갖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지역본부 선관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직접 유권해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가 경선일 경우에 한해, 유권해석 및 제재 조치를 지역본부 선관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7 현장투표 준비와 현장투표 기간

Q 출력 선거인명부에 대해

A 지역본부가 최종 출력하여 현장 배부하는 현장투표 선거인명부에 조합원 아님에 따른 삭제 외에는 어떤 추가 기록도 금지한다는 안내문, 복사금지 안내문 등과 함께 어떤 칸도 임의로 만들지 못하도록 아래 여분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Q 1회 1개 투표장소에 여러 투표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 명부와 투표함 배부

A 1개의 장소임에도 실제 선거일에 여러 투표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령, 출근 시 사업장 출입문에 여러 투표함을 두고 투표하게 할 계획을 가진 곳이 해당), 필요한 투표함 숫자만큼의 투표구(소)선관위원 숫자가 있음이 확인되면 그 숫자만큼의 선거인명부와 투표함을 추가 출력 및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명부의 복사는 절대 금지합니다.

Q 투표중단 없이 현장투표를 2일 이상 하는 경우 투표함 배부

A 가령, 3교대 조합원을 고려하여 2일 이상 투표를 실시하면서도 투표함 봉인 등의 투표중단 없이 투표구(소)선관위원이 교대로 관리할 경우에는, 투표일시를 1회로 간주하여 투표함을 배부합니다.

Q 현장투표함·명부 등을 선거일 전에 현장에서 끝내 배부받지 않을 시

A 현장투표를 진행할 투표구(소)가 현장투표함·선거인명부를 비롯한 투표관계서류 등을 끝내 배부 받지 않고 해당 선관위원 연락도 두절될 경우, 현장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해당 단위조직과 협의하여 전자투표로 전환, 단, 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재적에서 제외)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Q 각 현장투표소 별 기표소와 기표구 준비에 대해

A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현장투표소에서 쓸 기표소와 기표구를 따로 제작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각 단위조직마다 별도로 설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표구는 'Ⓢ'표 기구 또는 '○'표 기구(볼펜 앞부분을 제거한 용기도 인정)에 맞게 제작해야 하며 기표 시 기표구의 뒷부분으로 기표하지 못하도록 조치도 취해놔야 합니다. 단, 기표구로써 기재를 위한 필기구(볼펜과 싸인펜 등)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 및 민주노총 지역지부의 명부·투표함 일원화

A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와 민주노총 지역지부의 경우, 민주노총이 배부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또한 민주노총이 배부한 하나의 투표함으로 일원화합니다. 단, 투표용지의 경우 각 산별노조(연맹)와 지역지부가 따로 제작하는 만큼, 민주노총 위원장 투표용지 색상 및 16개 지역본부장 투표용지 색상과 구분되도록 다른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Q 명부에 서명은 했으나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 처리

A 개표 시 유효표, 무효표, 기권 등 3개로 나눠 집계되며, 이 경우 무효 집계 처리하면 됩니다. 기권은 명부 서명 자체를 하지 않은 이(즉 투표용지에 반영되지 않는 이)로 명확히 합니다. 본인인증은 했으나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전자투표도 마찬가지로 무효 집계 처리합니다.

Q 선거일 기간 현장투표율의 매일 16시 취합 · 보고의 효율적 방법에 대해

A 산별노조(연맹) 지역조직 산하 단위조직은 산별노조(연맹) 지역조직이 취합하여 지역본부에 보고, 그렇지 않은 단위조직은 지역본부가 직접 취합합니다. 모든 단위의 재적조합원수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으므로, 각 투표소별 매일 16시 현재 투표자수 취합 보고로 쉽게 종합될 수 있는 웹 시스템을 11월 초순까지 완비하여 사전 안내하겠습니다.

Q 현장투표 완료된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회송(지역본부로 반납)에 대해

A 선거일 최종 종료 전에 현장투표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된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지역본부로 회송(반납)해도 됩니다. 이 경우, 투표구(소)선관위원이 직접 지역본부에 운반하고 인수인계대장에 날인해야 합니다. 투표구(소)선관위원이 위임한 것이 확인되는 단위조직의 일반 노조간부가 인계자여도 인정합니다. 단, 회송(반납) 시 퀵서비스 및 택배서비스 이용은 불가합니다.

A 관할 지역본부 조정을 거쳐 투표구 소재 지역이 아닌 타 지역본부 관할로 조정된 경우, 투표함 회수(반납)를 조정된 지역본부로 해야 합니다. 조정된 지역본부가 멀다고 하여 소재 지역본부로 회수(반납)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Q 소규모 사업장 여러개를 모아 하나의 현장투표소로 등록하고, 투표소 선관위원이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A 하나의 투표소에서 일시와 장소를 다르게 해 여러 차례의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각 장소별 '현장투표 일시장소'를 지역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 장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반드시 투표함을 봉인해야 하며, 다른 장소에서는 새 투표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08 전자투표

Q 모든 전자투표의 문항설계 및 문항순서에 대해

A 모든 전자투표의 각 문항에는 '기표하지 않음' 문항을 넣어서 개표 집계시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모든 전자투표의 문항 순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등 →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등 →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 위원장 등 → (동시선거하는) 민주노총 지역지부장 등 → (동시선거하는) 단위노조(단위조직) 대표자 등의 순입니다.

Q 모바일투표 전 본인인증에 대해

A 선거인마다 하루에 [인증요청] 버튼 클릭 횟수 한도는 5회이며, 이 한도 초과시에도 해당일 투표는 불가하며 다음날에 해야 합니다. [인증요청] 버튼 터치부터 3분 이내 인증코드 입력하지 않으면 입력 실패 1회로 간주됩니다. 입력 실패 5회 시 인증 요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웹페이지 종료 후 재접속 시, 인증기회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인증절차를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인증코드 메시지가 지연되지 않게 실시간 발송되도록 설계했습니다.

Q ARS투표 전 본인인증에 대해

A ARS 전화 안내에 따른 숫자 4자리를 누르면 본인인증으로 같습니다. 그 뒤 전화 속 안내에 따라 기표행위를 하면 됩니다.

Q 단, 30초 이내에 위 인증코드(숫자 4자리)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재입력 1회 안내가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입력할 경우 통화 종료되어 당일 투표권은 상실됩니다. 또한 인증코드(숫자 4자리) 입력 5회 실패 시에도 당일 투표권은 상실되며 통화연결 후 본인인증 전 통화종료 시에도 당일 투표권은 상실됩니다. 당일 투표권 상실 시 다음 날 안내전화 받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Q ARS투표 유효시간에 대해

A 각 문항별 응답시간은 30초로 제한되며 재질문 1회 후에도 미응답 시 통화가 종료되어 당일 투표권은 상실됩니다. 당일 투표권 상실 시 다음 날 안내전화 받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Q 이메일투표 전 본인인증에 대해

A 위 [인증메일받기] 버튼 클릭은 한국시간 자정(밤 12시) 기준 1일 2회가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한국시간 기준 그 다음날에 [인증메일받기] 버튼 클릭하기를 해야 합니다.

Q 이메일투표 유효시간에 대해

A 선거일 7일 내내 24시간 투표가 가능합니다(선거일 마지막날은 한국시간 기준 18시 마감). 단, 본인인증을 거쳐 투표창을 접속한 뒤 1시간 이내 투표를 완료해야 하며, 시간 초과 시 한국시간 기준으로 하는 당일 투표권은 상실됩니다. 당일 투표권 상실 시 한국시간 기준 다음 날에 [인증메일받기] 버튼 클릭하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Q 본인인증 후 이메일투표 도중 중단했을 경우

A 모바일투표 및 ARS투표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Q 카카오톡이 없는 경우 모바일투표 가능 여부

A 모바일 투표 시 투표 주소(URL)는 카카오파워링크로 먼저 발송합니다.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널을 차단한 경우, 즉시 문자메시지로 재발송합니다.

Q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경우 본인 인증 가능 여부

A 민주노총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통신사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선거관리시스템에 가맹조직(단위조직)이 등록된 조합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고 있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09 선거일 기간 투표율 제고

Q 선거일 기간 투표율 공개 시스템에 대해

A 산별노조(연맹)별 민주노총 선거 투표율이 공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본부 별 민주노총 선거 투표율도 공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별노조(연맹) 및 지역본부별 현장투표율과 전자투표율 구분 공개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A 산별노조(연맹) 및 지역본부 별 부여 계정을 통한 시스템 접속을 통해서도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별 투표율도 내부 공개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Q 단, 모든 내외부 공개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Q 선거일 기간 모바일투표와 ARS투표 안내 메시지 및 전화 발송번호에 대해

A 해당 시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을 통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명의의 전화번호 뿐 아니라 각 산별노조(연맹) 전화번호 및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로도 모바일투표 및 ARS투표의 모바일 메시지 및 안내전화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 각 산별노조 / 각 지역본부> 명의의 계정(채널)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Q 전자투표 미투표자 목록 제공에 대해

A 현장투표와 마찬가지로 미투표자를 확인해 투표 독려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화번호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들에게도 제공됩니다. 단위조직에만 제공하는 경우, 일부 단위조직에서 특정 후보자에게만 미투표자 목록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미투표자 목록 제공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해당 단위조직과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시에 제공합니다. 투표 독려는 해당 선거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단위조직이 해야 합니다.

10 연장투표, 일부재투표, 결선투표 개표 시

Q 연장투표, 일부재투표, 결선투표 시 휴대전화번호 추가 등재 가능 여부

A 연장투표 · 일부재투표 · 결선투표 시 기존 현장투표를 전자투표(ARS 및 모바일투표)로 전환할 때라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미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추가 등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본투표 시 현장투표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이후 연장투표 · 일부재투표 · 결선투표 시 전자투표로의 전환 용이성을 감안하여 최초 명부 등록 때 반드시 휴대전화번호 등재를 당부드립니다.

Q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와 민주노총 지역지부만 연장투표를 할 경우

A 민주노총 전국 선거구와 각 지역본부 지역선거구 과반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 또는 특정 지역지부가 과반 투표율이 되지 않아 연장투표를 돌입할 경우, 해당 선거구와 동일 투표함을 쓴 곳은 민주노총 및 지역본부 개표도 순연합니다.

Q 투표함 회수 과정에서 투표함 분실이 확인된 경우

A 개표를 위한 현장투표함 회수를 시작하였으나 미회수 투표함이 있어 확인한 결과 해당 투표소의 해당 투표함이 분실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투표함은 무효 처리하며 일부재투표 판단의 사유가 됩니다.

Q 유효표/무효표 분류의 기준 및 일부재투표 사유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A 11월 중순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 개표사무안내서에 담아 지역본부에 파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Q 개표결과의 효율적인 중앙 보고에 대해

A 11월 중순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 개표결과 중앙보고 웹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개표사무안내서에 담아 지역본부에 파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Q 선거 도중, 혹은 연장투표 시 현장투표 투표소의 전자투표로 전환 가능 여부

A 이미 현장투표를 진행한 선거인이 있다면 전자투표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Q 동시선거를 진행하는 산별노조(연맹)의 개표 시 민주노총 선거관리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

A 민주노총의 '일부재투표'기준에 따라 개표 및 집계를 하는 조건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11 기타

Q 지역본부가 행하는 공보물 발송비, 투표함 이동비, 개표장소 대여비 등

A 지역본부가 행하는 공보물 발송비와 개표장소 대여비는 실비로 중앙 지원합니다. 지역본부가 행하는 선거인명부, 투표함, 투표용지, 투표관계서류 등의 현장배부 이동비의 경우, 차량대여 및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비로 중앙 지원합니다. 순회 합동유세의 경비 중 대관료를 비롯한 제반비용의 중앙 지원 기준도 마련해 집행하겠습니다.

Q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외 조직단위의 별도 모바일 메시지 발송 요청 시

A 선거일 기간 모바일투표와 ARS투표 모바일 메시지 및 전화 발송번호를 지역본부 또는 산별노조(연맹)로 하여 발송하는 것 이외에, 명부 등록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별도 모바일 메시지 발송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소속 연맹의 산별 전환 시 전환을 하지 못한 미전환 사업장의 선거권 여부

A 현재 산별노조 소속은 아니지만, 산별노조를 통해 민주노총 맴비를 납부 중이라면 해당 산별노조를 통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